

증평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[2003. 12. 15 조례 제66호]

개정 2004. 6. 30 조례 제 117호
개정 2007. 3. 23 조례 제 227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개정 2007. 11. 23 조례 제 264호
개정 2008. 8. 6 조례 제 293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일부개정 2011. 1. 7 조례 제 368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일부개정 2012. 11. 9 조례 제447호
일부개정 2015. 10. 2 조례 제 601호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 2018. 12. 28 조례 제 845호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 2022. 12. 29 조례 제1067호
(조직개편에 따른 「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
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증평군내 향토유적을 보호·관리하고 계승 발전시켜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 11. 9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란 「문화재보호법」 및 「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7. 11. 23, 2012. 11. 9, 2015. 10. 2>

1. 향토적·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·경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
2. 향토문화, 토속, 풍속 등을 연구 또는 보존관리 하는 데 필요한 것
3. 동물, 식물, 광물 등 지질학적·생물학적 생성물과 그 밖에 자연현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

제3조(위원회 설치) 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증평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간사는 문화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. <개정 2004. 6. 30, 2007. 3. 23, 2008. 8. 6, 2011. 1. 7, 2015. 10. 2, 2018. 12. 28, 2022. 12. 29>

③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 <개정

2015. 10. 2>

제4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. <개정 2012. 11. 9, 2015. 10. 2>

1.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
2. 향토유적의 보호구역 설정과 해제
3. 향토유적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
4. 향토유적의 중요한 수리·복구·이전 등 향토유적보호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향토유적 보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의2(의결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5. 10. 2>

[본조신설 2004. 6. 30]

제5조(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) ①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유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.

② 보존가치가 상실된 향토유적의 지정 해제는 제1항에 따른다. <개정 2012. 11. 9>

제6조(지정기준) 향토유적의 지정기준은 「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」의 지정기준을 준용한다. <개정 2007. 11. 23, 2012. 11. 9>

제7조(보호구역 설정 및 해제) ① 군수는 향토유적의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1. 9>

② 향토유적의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「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」의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준용한다. <개정 2007. 11. 23, 2012. 11. 9>

③ 군수는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는 향토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 <개정 2012. 11. 9>

1. 건축허가
2. 토지 형질 변경 허가
3. 그 밖에 향토유적 보존관리에 지장이 있는 행위

④ 보호구역의 해제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5. 10. 2>

제8조(고시) 향토유적의 지정·해제·변경 및 보호구역의 설정·변경·해제 시에는 군보, 일간신문,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0. 2>

제9조(지정서 교부)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적 지정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관리자의 지정) ① 군수는 향토유적 보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1. 9, 2015. 10. 2>

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적은 보호 관리에 적정한 개인·단체·법인 또는 소재지 읍·면장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0. 2>

제11조(보존관리) 군수 및 향토유적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향토유적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1. 9>

1. 향토유적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변형이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.
2. 군수는 향토유적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.
3. 유적과 보호구역내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매수요구 또는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.
4. 향토유적 또는 그 주변에서 건축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시 군수는 유적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.
5. 군수는 향토유적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진입로 정비, 경내정화, 보호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12조(점검) 군수는 향토유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1. 9>

제13조(경비 보조 등) ① 군수는 향토유적 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.

제14조(집중관리)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미술, 조각, 공예, 서적 등 이동이 가능한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이동시킬 때에는 그 실황과 위

치, 이동사유 등을 문서·영상·음향·사진 등으로 기록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〈개정 2015. 10. 2〉

제15조(관리기록부 작성) 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적관리 기록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관리기록부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16조(주민계도 등)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내역과 사유를 주민에게 계도하여 향토유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보존관리에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4. 6. 30 조례 제117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7. 3. 23 조례 제227호,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⑪ 까지 생략

⑫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중 “복지문화과장”을 “문화체육홍보과장”으로, “문화관광담당”을 “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
⑬ 부터 ⑳ 까지 생략

부칙(2007. 11. 23 조례 제26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8. 8. 6 조례 제293호,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㉔ 까지 생략

㉕ 증평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문화체육홍보과장”을 “문화체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③⑩ 부터 ④① 까지 생략

부칙(2011. 1. 7 조례 제368호,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⑭ 까지 생략

⑮ 증평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”를 “관광자원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
⑯ 부터 ㉓ 까지 생략

부칙(2012. 11. 9 조례 제447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5. 10. 2 조례 제601호,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 12. 28 조례 제845호,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12. 29 조례 제1067호, 조직개편에 따른 「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
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제 호

향 토 유 적 지 정 서

위 치

명 칭

수 량

소유자 주소 :
성명 : (전화번호)
관리자 주소 :
성명 : (전화번호)

위 사항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증 평 군 수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5. 10. 2>

향토 유적 지정서 발급대장

지정 번호	유적명	지 정 연월일	소재지 또 는 보관장소	소유자 또는 관리자		보호 구역	전화 번호
				주 소	생년월일		
					성 명		

[별지 제3호서식]

(전면)

향 토 유 적 관 리 기 록 부

지정번호 :

명 칭		수량		소재지		
지정년월일				연락처	전화번호: 핸드폰 :	
소유자	주소			관리자	주소	
	성명				성명	
지정내역		보호구역			보수실적	
현황사진		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(후면)

향 토 유 적 관 리 기 록 부

지정번호 :

명 칭		수 량		소재지		
지정년월일				연락처	전화번호 핸드폰	
소유자	주소			관리자	주소	
	성명				성명	
지정내역		보호구역			보수실적	
현황사진						